

# 자립을 희망하는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우리의 이웃으로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기반 마련

- 「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 및 주거 전환 지원에 관한 법률」 국회 본회의 통과 -

보건복지부(장관 조규홍)는 2월 27일(목) 「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 및 주거 전환 지원에 관한 법률(이하 “장애인 자립지원법”)」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.

동 법은 ▲제21대 및 제22대 국회의 심도있는 논의와 ▲장애인 자립지원 시범사업('22년~)의 결과, ▲장애계·전문가 등의 다양한 의견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마련되었다.

장애인 자립지원법 제정으로 장애인이 본인 의사에 따라 지역사회에서 자립하여 우리의 이웃으로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, 장애인 자립지원 시범사업의 본사업 전환을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할 수 있게 되었다.

동 법은 자립을 희망하는 장애인(시설·재가)의 주거선택권 보장과 지역사회에서 독립적인 삶을 지원하기 위해 장애 특성을 반영한 주택 제공, 주거생활 서비스<sup>①</sup> 등 사항을 규정하는 한편, 이를 실질적으로 구현할 수 있도록 중앙<sup>②</sup>과 지방자치단체에 통합지원센터<sup>③</sup>를 설치하고, 주거생활 서비스 제공기관을 지정·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다.

① 주택관리, 일상생활 지원, 의료·건강 지원, 정서 지원, 재산관리 지원 등

② 한국장애인개발원에 ‘중앙장애인지역사회통합지원센터’ 설치·운영 중('21년~)

③ 전담인력을 배치하여 대상자 조사·발굴, 개인별 지원계획 수립 등 역할 수행

아울러 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 및 주거 전환을 효과적으로 지원하는 데 필요한 체계를 갖추고 발전시켜야 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명확히 하였다.

또한 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생활이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, ▲소득·주거지원 ▲활동지원급여 추가제공 ▲정착지원금 지원 ▲의료·건강 지원 ▲일자리·주간활동지원 등을 연계·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면서,

거주시설의 장이 장애인의 주거 전환을 위하여 협력하는 경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행정적·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.

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“장애인이 본인 의사에 따라 지역사회에서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은 장애인 권리보장을 위한 국가의 책무로, 이들이 지역사회에서 독립적인 주체로서 안정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나갈 것”이라며,

“법 시행(공포 후 2년) 시까지 하위법령 마련뿐만 아니라, 최근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 지원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는 울산 등 지역의 시범사업 참여 확대\*, 중앙 및 지역통합지원센터 전달체계 구축 등 본사업 시행 준비를 철저히 해 나갈 계획이다”라고 밝혔다.

\* '25년 현재 기준 32개 지자체 참여(광역 7개, 기초 25개) 중으로, 미참여 광역지역(울산, 대전, 세종, 충북) 참여 확대 추진

△(광역 7개) 서울, 부산, 인천, 대구, 광주, 전북, 충남, △(기초 25개) 성남시, 의왕시, 안산시, 부천시, 시흥시, 이천시, 구리시, 안성시, 포천시, 양평군, 양주시, 평택시, 서산시, 경주시, 안동시, 구미시, 영천시, 전주시, 군산시, 익산시, 강릉시, 인제군, 거창군, 화순군, 제주시(행정시)

- <붙임> 1. 장애인 자립지원법 주요 내용  
2. 시범사업 주요 내용

담당 부서	장애인정책국 장애인정책과	책임자	과 장	성재경 (044-202-3280)
		담당자	사무관	전준호 (044-202-3181)
담당 부서	한국장애인개발원 중앙장애인지역사회통합지원센터	책임자	주무관	방승규 (044-202-3182)
		담당자	센터장	서해정 (02-3433-4653)
			차장	신미화 (02-3433-4533)



더 아픈 환자에게 양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

**가벼운 증상은 동네 병·의원으로**



**1 법 제명 : 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 및 주거 전환 지원에 관한 법률안**  
(총 6장, 38개 조문)**2 제1장 총칙(제1조 ~ 제9조)**

- (목적) 모든 장애인에게 지역사회 자립기반과 주거전환을 지원하여 인간다운 삶 보장과 사회통합을 이루는 데 이바지함을 규정
- (정의) 장애인에게 '지역사회 자립'과 '주거 전환'을 지원하여 지역사회에서 독립된 주체로서 안정된 생활을 하는 것으로 정의
- (장애인의 권리) 거주지·동거인 선택권, 의사표시 도움받을 권리, 지역사회 자립지원 서비스권, 정책과정 참여권리 등 규정
- (자기결정권의 보장) 지역사회 정착과정에서 스스로 결정, 의사결정을 위한 충분한 지원, 지원시 당사자 최선의 이익 등 규정
- (국가와 지자체 책무) 지역사회 자립·주거전환 지원체계 갖추고 발전, 장애인 참여 보장, 인력과 예산 확보 노력 등 규정

**3 제2장 기본계획 등 자립지원체계(제10조 ~ 제16조)**

- (기본계획 및 실태조사) 5년 단위 기본계획 수립 및 3년 단위 실태조사 실시
- (자립지원 심의) 지역사회 자립을 위한 정책의 수립과 이행을 장애인 정책조정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규정
- (지역장애인자립지원위원회) 지역에서의 자립지원 관련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역장애인자립지원위원회를 두도록 규정
- (중앙 및 지역센터) 연구·조사, 인력양성, 정보관리 등 종합적인 지원을 위해 중앙 및 지역센터를 설치·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

#### 4 제3장 지역사회 자립 지원(제17조 ~ 제31조)

- (상담, 정보제공) 지역센터는 지역사회 자립 및 준비에 관한 상담 및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고 동료지원가의 참여 등 규정
- (자립신청, 조사) 장애인과 보호자는 시장등에 자립지원 신청, 시장등은 지역센터에 의뢰하여 신청인의 자격, 지원사항 등을 조사하고, 거주시설 장애인 욕구조사 등을 정기 실시
- (선정) 조사 결과, 자립지원위원회 심의를 거쳐 대상자 선정 및 통보
- (개인별 지원계획) 조사결과와 급여 및 서비스 종류 등을 고려하여 개인별 지원계획을 수립하고, 자립지원위원회 심의를 거쳐 승인
- (자립준비 및 긴급지원) 자립 희망 장애인에게 주거전환 정보를 제공하고, 학대, 보호자 부재 등에는 자립을 우선 지원 규정
- (자립 장애인 지원) 자립대상자에게 활동지원, 정착지원금, 건강권 보장, 재활지원 등 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
- (주택, 주거생활 지원) 욕구, 특성을 반영한 장애인주택 제공과 안정된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주거생활 서비스를 제공
- (상황평가) 자립한 장애인에 대한 상황을 평가하도록 규정
- (전문인력 양성) 지역사회 자립지원 인력을 양성하도록 규정

#### 5 제4장 지역사회 주거 전환 지원(제32조 ~ 제33조)

- (주거전환 지원) 거주시설장의 장애인 자립지원 협력 및 지원 규정
- (주거전환 평가) 매년 자립의사 조사결과와 거주시설 협력 등을 포함한 지역사회 자립지원 및 주거전환 상황을 평가하도록 규정

#### 6 제5장 보칙 및 제6장 벌칙(제34조 ~ 제38조)

- 지도·감독, 보고·검사, 벌칙, 양벌규정, 과태료를 규정

□ **사업목표**

- 시범사업의 본사업 전환('26년)을 위한 ①자립 효과 분석·평가, ②장애 특성별 지원모형 마련, ③지원 대상 규모 추계 등

□ **주요내용**

- (사업대상) 시범사업 참여 지자체(광역시, 기초 25) 관내 지역사회 자립을 희망하는 장애인\*

\* 장애인거주시설, 단기거주시설, 학대피해쉼터, 재가장애인(시설 입소 가능성이 높은)

- 시설장애인과 함께, 시설 입소 가능성이 높은 재가장애인\*을 조기 발굴하여 자립을 지원하는 예방적 정책을 강화

\* 보호자의 장기 부재(사망, 질병 등), 위기가구, 학대 피해, 입소 대기 등

- (사업예산) ('22) 22억 → ('23) 48억 → ('24) 60억 → ('25) 54억 (국비 기준)

- (자립지원) 총 292명(시설 125명, 재가 100명, 학대피해쉼터 22명 등 / 발달장애인 230명, 뇌병변 30명 등 / '25년 2월 기준)

- (주택) 국토부(LH) 매입임대주택 등 총 319호('24년 말 기준)

- (사업내용) 자립지원 전담인력을 배치하여 대상자 발굴 및 장애 특성을 고려한 주거, 공적서비스 통합 연계\*

\* 공공임대주택, 기초생활급여(생계·주거급여), 장애인일자리, 건강관리(보건소, 지역보건 의료센터, 건강검진 지원 등), 활동지원서비스, 재산관리지원서비스 등

- (시범사업 기간) '22년부터 법 시행일 기준 본사업 전환 전까지

**< 연차별 시범사업 추진계획 >**

2022년(도입기)	2023~2024년(추진기)	2025년~(본사업 준비기)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▶ 지자체 공모 및 전달체계 조성</li> <li>▶ 지원 대상자 발굴 및 통합서비스 지원·연계</li> <li>▶ 시범사업 지침 마련</li> <li>▶ 시범사업 모니터링 및 모형 마련 연구(연차별)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▶ 지자체 공모 및 전달체계 조성</li> <li>▶ 시범사업 고도화</li> <li>* 추진과정 평가, 참여지역 및 이해관계자 의견수렴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▶ 시범사업 평가, 지역센터 등 전달체계 조성</li> <li>▶ 근거 법령 및 하위법령 마련 등 본사업의 제도적 기반 마련</li> </ul>